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9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전재수・이기헌・허 영

신영대 · 김정호 · 민홍철

김태선 · 복기왕 · 위성곤

이학영 · 허성무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을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 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를 "해사 전문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			
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			
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			
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			
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			
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			
하는 <u>지방법원</u> 의 관할에 전속	<u>해사전문법원</u>		
한다.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	<u><삭 제></u>		
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			
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			
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			
다.			

- 의 소) ① (생 략)
 -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 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 에 전속한다.
 - ③ (생 략)

-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 의 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② ----- 해사전문법원
 - ③ (현행과 같음)